

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재생
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3 월 15 일

여 수 시 장 2023.03.15. 

여수시 조례 제1852호

붙임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 1부

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필요한”을 “필요한 사항과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재생활성화지역”을 “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새뜰마을사업지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도시재생 활성화”를 “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3조(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
2.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
3.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(사후관리 지도 감독) ①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5조(보고) 시장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도시재생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사항과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<u>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</u></p>
<p>제20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도시재생활성화지역</u>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</p>	<p>제20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----- ----- <u>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새뜰마을사업지구</u> -----</p>

는 경감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(생 략)

제5장

<신 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장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

제22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.

제23조(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

2.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

3.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신 설>

제24조(사후관리 지도 감독) ① 시

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5조(보고) 시장은 도시재생 분야

전문가들로 구성한 도시재생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6장 보칙

제22조 · 제23조 (생 략)

제26조 · 제27조 (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)